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

제정 2016. 11. 18 조례 제2204호 일부개정 2019. 3. 26 조례 제2457호 일부개정 2020. 3. 25 조례 제2584호(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)

- 제1조(목 적) 이 조례는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9. 3. 26〉
- 제2조(영업장소와 첨부서류)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(이하 "휴게음식점영업 등"이라 한다)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정 2019. 3. 26, 2020. 3. 25〉
 - 1. 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
 - 가.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·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·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(이하 "시설 운영자"라 한다)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: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·신고증 등 서류
 - 나.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: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
 -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,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: 행사의 주 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 - 3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 산 및 기업용재산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 ·수익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
 - 4. 그 밖에 광명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, 다른 법령과의 관계, 이용자의 안전,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: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

- 제2조의2(영업장소 지정신청)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 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·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주변환경, 재산관리의 적합성,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, 지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9. 3. 26]

- 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. 다만,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영업장소, 영업기간, 영업방법 등을 특정하여 임시로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. 〈단서신설 2019. 3. 26, 개정 2020. 3. 25〉
- 제4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식품위생법」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. 〈개정 2019. 3. 26〉
- 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9. 3. 26 조례 제2457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0. 3. 25 조례 제2584호,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